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가단13175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15.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6. 접수 제165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41967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8. 'C는 원고에게 8,407,288원 및 그 중 3,916,874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7. 확정되었다.

#### 나.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행

1)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9. 10. 1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인 E, F, C, G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E, F, C, G은 2019.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라고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C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1 지분 권리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이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1) C의 무자력 여부

C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C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을 인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 별 지 목 록

##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 364.1㎡

## [건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하 46.95㎡

1층 163.15㎡

2층 118.59㎡

(· 이상 대구지방법원 통기국 / 현 소유자 )

